

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사업연도		연결자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		
		연결모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		
연결전 연결연도소득 계산	각 사업연도 소득	①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					
	소득조정 금액	② 익 금 산 입					
		③ 손 금 산 입					
	④ 차가감		소득금액 (①+②-③)				
	⑤ 기부금		손금산입 한도초과액				
	⑥ 기부금		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 액 손 금 산 입				
	⑦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		(④+⑤-⑥)				
연결법인별 조정항목 연결 제거	조입	⑧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					
	기업업무추진비	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					
	기부금	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					
	기부금	손금산입 한도 초과 이월액 손금불산입					
연결집단내 연결	⑫ 차가감계 (⑦+⑧-⑨-⑩+⑪)						
	⑬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상당액 익금불산입						
	⑭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상당액 손금불산입						
	⑮-1 직전 사업연도 연결법인 채권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산입						
	⑮-2 연결법인간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불산입						
	⑯ 연결법인간 자산 양도소득		⑮익금불산입 ⑯익금산입				
	⑰ 연결법인간 자산 양도손실		⑮손금불산입 ⑰손금산입				
연결법인별 배분액 연결조정항목의	⑲ 차가감계 [⑫-⑬+⑭-(⑮-1)+(⑮-2)-⑯+⑰-⑱]						
	⑳ 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						
	㉑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						
	㉒ 기부금 조정전 연결소득금액 (㉒-㉓+㉔)						
	㉕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						
	㉖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 이월액 손금산입						
	㉗ 연결수정소득금액 (㉕+㉖-㉘)						
연출세액의 개별귀속 및	㉙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 처분손실손금불산입						
	㉚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(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)(㉙+㉚)						
	㉛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(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)						
	㉜ 연결이월결손금공제						
	㉝ 비과세소득						
	㉞ 소득공제액						
납부할 세액 계산	㉟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(㉟-㊱-㊲-㊳)						
	㊴ 연결세액						
	㊵ 연결법인별 산출세액						
	㊶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						
	㊷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						
	㊸ 가 산 세 액						
	㊹ 가 감 계 (㊸-㊹-㊺+㊻)						
	기 납 부 세 액	기 한 내 납 부 세 액	㊼ 중 간 예 납 세 액				
			㊽ 원 천 납 부 세 액				
			㊾ () 세 액				
㊿ 소 계 (㊼+㊽+㊾)							
㋀ 신고납부전 가산세액							
㋁ 합 (㊿+㋀)							
㋂ 감면분 추가납부세액							
㋃ 차 감 납 부 할 세 액 (㋁-㋂+㋄)							
토지 양 도 소 득 에 대 한 법 인 세 계 산	양 차 도 익	㋅ 등 기 자 산					
		㋆ 미 등 기 자 산					
	㋇ 비 과 세 소 득						
	㋈ 과 세 표 준 (㋅+㋆-㋇)						
	㋉ 세 액						
	㋊ 산 출 세 액						
	㋋ 감 면 세 액						
	㋌ 공 제 세 액						
	㋍ 가 산 세 액						
	㋎ 가 감 계 (㋊-㋋-㋌+㋍)						
㋏ 기 납 부 세 액							
㋐ 차 감 납 부 할 세 액 (㋎-㋏)							
미 환 류 소 득 법 인 세	㋑ 과세대상 미환류소득						
	㋒ 세 액						
	㋓ 산 출 세 액						
	㋔ 가 산 세 액						
	㋕ 이 자 상 당 액						
	㋖ 납부할세액(㋓+㋔+㋕)						
㋗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(㋐+㋖+㋑)							
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							
㋙ 납 부 (환 금) 할 세 액 (㋗-㋘)							

작성 방법

* 이 서식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에서 연결법인별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.

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6서식) 및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(별지 제76호의7서식)의 각 항목 중 해당 연결법인란에 기재한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
<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>

1. ㉔ 과세대상 미환류소득란: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14호서식)의 ㉔금액(음수인 경우 '0')을 적습니다. 다만, 2017.1.1.부터 2017.12.31.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㉔금액에 종전의 「법인세법」(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(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2호의2서식)의 ㉔금액(음수인 경우 '0')을 합산하여 적습니다.
2. ㉕ 가산세액란: 가산세액계산서(별지 제9호서식)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㉕가산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.
3. ㉖ 이자상당액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0조의3제2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종전의 「법인세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93조제20항에 따른 금액[종전의 「법인세법」(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56조제8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]을 합산하여 적습니다.